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9 선고 2021가단521805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

담당변호사 조홍래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9.

주 문

1. 피고 A는 원고에게 37,865,208원과 그 중 20,046,849원에 대하여는 2021. 6. 25.부터, 17,784,542원에 대하여는 2021. 8. 3.부터 각 2021. 9. 8.까지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. 30.자 체결한 매매계약을 37,865,208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 B는 원고에게 37,865,2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피고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). 2. 근거: 무변론
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박진수

별지